

瑞山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2001. 8. 27

총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: 2001. 8. 20

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
다. 回附日字 : 2001. 8. 21

라. 上程日字 : 2001. 8. 27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: 崔鎮珏)

가. 提案理由

-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·시달되었고
- 행정기구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『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·명칭운용등에관한지침』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·명칭운용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“행정지원국”을 “총무국”으로, “종합민원실”을 “종합민원과”로 기구명칭을 변경함(안 제3조,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)
-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기구를 신설함(안 제15조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□ 행정기구 명칭변경 관련

- 금번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'98. 6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기구의 명칭 부여와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공직내부에서 조차 혼선을 야기하는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.
- 우리시의 경우도 『'99년도 2차 조직개편 지침』에 의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명칭과의 혼선은 물론 부르기도 어려워 변경이 요구되던 차에 2001. 6. 14자로 『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·명칭운용등에관한지침』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

본 지침에 의거 간단명료하고, 부르기 쉬우며,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신설관련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의거 서산시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전담 관리할 기구와 12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2001. 7. 31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됨.
-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어 본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구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2 / 호
의 결 년 월 일	2001. . . (제 회)

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. 8. 20.

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8. 20.
제출자 : 서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전담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·시달되었고
- 행정기구 명칭부여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한 『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·명칭운동등에 관한 지침』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행정자치부의 기구설치·명칭운동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“행정 지원국”을 “총무국”으로, “종합민원실”을 “종합민원과”로 기구명칭을 변경함(안 제3조,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)
-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정하여 기구를 신설함(안 제15조)

기타 참고사항

- 관련법규
 - 지방자치법 제102조, 제105조
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
 - 충청남도 행정 12200-1513(2001. 6. 14)호
 - 충청남도 행정 12200-1942(2001. 7. 31)호

○ 정원 승인현황

기관명	계	일반직						기능직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	
서산시문화체육 시설관리사무소 (사업소)	13	9	1 (행정)	2 (행정, 행정, 기계 복수)	2 (행정, 전기)	2 (임업, 토목)	2 (행정, 기계)	4 (사무, 조무, 위생 2)
본 청	△1					△1 (토목)		
합 계	12	8	1	2	2	1	2	4

※ 청원경찰 1명 : 자체정원에서 별도 조정

○ 기구조정 현황

구분	국	담당관	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의회	
							국	담당
현행	3	2 (10담당)	15 (63담당)	2 (4과16담당)	4 (9담당)	15 (46담당)	1	2
조정	3	2 (10담당)	15 (63담당)	2 (4과16담당)	5 (11담당)	15 (46담당)	1	2
증감					+1			

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5조의 조제목 및 제5조제1항중 “행정지원국”을 각각 “총무국”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종합민원실”을 “종합민원과”로 한다.

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

가. 사업소내 소관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나.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이용·공연 및 체육행사등 시민의 문화체육복지에 관한 사항

다.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라. 기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 관련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

[별표3] 사업소의 명칭·위치중 종합사회복지관란 다음에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	서산시 갈산동 110-1
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②서산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③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종합민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④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⑤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⑥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⑦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⑧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행정지원국</u>, <u>사회산업국</u> 및 <u>건설도시국</u>을 둔다.</p>	<p>제3조(국의 설치) ----- ----- <u>총무국</u> ----- -----</p>
<p>제5조(<u>행정지원국</u>에 두는 과) ①<u>행정지원국</u>에 자치행정과, 세무과, 회계과, <u>종합민원실</u> 및 <u>민방위재난관리과</u>를 둔다. ②<u>행정지원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12. (생략)</p>	<p>제5조(<u>총무국</u>에 두는 과) ①<u>총무국</u>----- ----- <u>종합민원과</u> ----- ----- ②<u>총무국장</u>----- ----- 1.~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~4.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15조(소관사무)----- ----- ----- 1.~4. (현행과 같음) 5. <u>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</u> 가. <u>사업소내 소관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</u>에 관한 사항 나. <u>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이용·공연 및 체육행사</u> 등 시민의 문화체육복지에 관한 사항 다. <u>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용</u>에 관한 사항 라. <u>기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</u> 관련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</p>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·위치
(제13조제2항 관련)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·위치
(제13조제2항 관련)

명 칭	위 치
문화회관	(생략)
상하수도사업소	(생략)
시립도서관	(생략)
종합사회복지관	(생략)
(신설)	(신설)

명 칭	위 치
문화회관	(현행과 같음)
상하수도사업소	(현행과 같음)
시립도서관	(현행과 같음)
종합사회복지관	(현행과 같음)
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	서산시 갈산동 110-1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(다른조례의 개정)

현행	개정안
<p>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(구성) ①(생략)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행정지원국장</u>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③~⑤ (생략)</p>	<p>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총무국장</u>----- ----- ----- 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(간사, 서기) ① (생략) ②간사는 <u>행정지원국장</u>이 되고,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</p>	<p>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7조(간사,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총무국장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(구성) ① (생략)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행정지원국장</u>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관 국장·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7조(간사) ① (생략) ②위원회의 간사는 <u>종합민원실장</u> 및 주관부서 담당관·과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시민과 민원 담당이 된다.</p>	<p>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 <u>총무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제7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종합민원과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</p> 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<u>행정지원국장</u>·<u>사회산업국장</u>·<u>건설도시국장</u>·<u>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</u>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</p> <p>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총무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</p> <p>제2조(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<u>행정지원국장</u>, <u>사회산업국장</u> 및 <u>건설도시국장</u>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,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</p> <p>제2조(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----- <u>총무</u> <u>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영관은 <u>행정지원국장</u>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.</p>	<p>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</p> <p>② ----- <u>총무국장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(회계공무원 등) ①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행정지원국장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<u>행정지원국장</u>이 된다.</p>	<p>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(회계공무원 등) ①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<u>총무국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<u>총무국장</u>-----</p>
<p>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(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<u>행정지원국장</u>, 사회산업국장,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, 학계·경제계·금융계·소비자단체 임원, 유통단체 대표, 주민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19조(구성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<u>총무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